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 월 일	2022. . .

법 제 처 심사 전

1. 개정 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법률 제17343호, 2020. 6. 9. 공포, 2021. 1. 1. 시행)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에 관하여 자체규정에 따라 검증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 제정(대통령령 제31297호, 2020. 12. 29.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검증을 위하여 자체규정을 마련하는 경우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별지 제1호 서식과 관련하여 포항 지진 진상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안전 및 보안조치를 충실히 작성하도록 명확히 하고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 서식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정행위 검증·조치를 위한 조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5조부터 제18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마련해야 하는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 절차 및 방법, 조사 결과 통보·보고에 관한 사항,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별지 제1호 서식과 관련하여 <본문1>의 안내사항에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안전 및 보안조치를 충실히 작성하도록 하고 참여연구자 현황에서 학생연구자의 ‘현 학위과정’과 ‘전공’, ‘입학연도’를 기재하도록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4조를 제3조로 한다.

제3조(중전의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57조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의 검증·조치
· 보고에 관한 자체규정을 마련·운영할 때에 제4조부터 제17조까지
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1장에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익명제보의 검토)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 또는 제4항
에 따라 익명제보를 접수하거나 이관 받은 경우에는 그 제보 내용의
타당성 등 익명으로 제보된 부정행위에 대하여 검증·조치가 필요한
지 검토해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검증·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
우 그 결과 및 이유를 익명제보(제4조제2항제6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
우로 한정한다)를 한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익명제보의 내용이 거짓·허위인 경우

2. 익명제보의 내용이 명백히 부정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검증·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내용을 다시 익명제보 한 경우

제2장(제6조부터 제1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연구부정행위 검증·조치·보고

제6조(예비조사)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를 한 자가 연구부정행위를 한 당시에 소속 연구자일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에 관련된 제보(익명제보를 제외한다)를 접수하거나 이관 받은 경우
2. 제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에 관련된 익명제보를 접수하거나 이관 받아 제5조제1항에 따라 검증·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3. 연구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라 제보를 접수한 날, 이관을 받은 날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예비조사의 방법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예비조사 절차·일정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연구부정의심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 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비조사를 착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조사를 종료하여야 하고, 예비조사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조사 결과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에는 제보자에 대한 통보를 아니 할 수 있다.

⑦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혐의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7조(본조사)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예비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본조사 절차·일정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성·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조사 위원회의 조사과정·결과를 존중하고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예비조사를 착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본 조사를 종료하여야 하고, 본조사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에는 제보자에 대한 통보를 아니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본조사를 충실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4항에 따른 조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보자, 조사대상자에게 연장사실과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6조제6항에 따른 예비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제보자와 조사대상자
2. 제7조제4항에 따른 본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제보자와 조사대상자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신청과 관련된 조사 결과에 대해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과 관련된 조사 결과에 대해 재검토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각각 재검토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과 관련된 조사 결과에 대해 재검토를 한 경우,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재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위원회의 판단)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2.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해당 연구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조사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에 위원의 과반수를 해당 연구개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구개발 분야의 전문가 중 1명 이상을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소속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조사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에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소속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 다만, 조사분야와 관련한 전문성을 갖춘 자가 부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에는 30퍼센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조사위원이 된 자는 조사대상자 및 조사대상 연구개발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사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조사대상 연구개발과제 또는 제보내용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본조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⑤ 조사위원이 된 자가 조사과정 중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되며, 위원 본인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본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으로 통보할 수 없는 경우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제보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그 신청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위

원을 해촉하고 다른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⑧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조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⑨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조사대상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⑩ 조사위원회는 조사 관련자에게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부정의심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조사대상자 등의 조사 요청) ①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제8조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의 조

사 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의 조사 요청 내용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구개발기관의 조사의 결과 또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허위로 연구부정의심행위를 제보한 자에 대하여는 제2호를 준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비조사 및 본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
2. 연구부정의심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제보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고, 제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에 따른 연구부정의심행위의 제보·접수·이관, 제5조에 따른 제보의 검토, 제6조에 따른 예비조사에 관한 내용, 제7조에 따른 본조사에 관한 내용, 제8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재검토에 관한 사항 및 이를 통해 알게 된 사항을 본조사 결과(제6조제5항에 따라 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비조사 결과와 제8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재검토 결과를 포

함한다)가 통보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1. 제4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한 당시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에 이관하는 경우
 2. 제5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익명제보의 검증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 결과 및 사유를 제보자에게 통보하는 경우
 3. 제6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예비조사 절차·일정을 사전에 통보하는 경우
 4. 제7조제2항에 따라 조사위원회가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본조사 절차·일정을 사전에 통보하는 경우
 5. 제8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이의신청과 관련된 조사 결과에 대해 재검토 계획을 통보하는 경우
 6. 제10조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본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통보하는 경우
- ③ 조사과정에 참여한 조사위원이나 조사위원이었던 사람 또는 조사관련자이거나 조사 관련자이었던 사람은 예비조사·본조사에서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부정의심행위가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고, 조사대상자가 명예회복을 신청할 경우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결과의 제출)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다른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문서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따른 증인, 참고인, 예비조사 및 자문에 참여한 사람 등 검증에 관여한 사람의 소속 및 성명은 생략할 수 있다.

1. 제보의 내용과 제보자의 진술내용(제보에 따라 예비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3. 관련 연구개발과제명
4. 관련 증거자료
5. 증인, 참고인, 예비조사 및 자문에 참여한 사람 등 검증에 관여한 사람의 소속 및 성명, 전문분야
6. 예비조사 결과 및 그 판단 근거
7. 예비조사 결과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조치계획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신청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문서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따른 조사위원회 위원의 성명과 제6호에 따른 증인, 참고인, 예비조사·본조사 및 자문에 참여한 사람 등 검증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소속 및 성명은 생략할 수 있다.

1. 제보의 내용과 제보자의 진술내용(제보에 따라 본조사를 실시한 경

우에만 해당한다)

2.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3. 관련 연구개발과제명

4. 관련 증거자료

5. 조사위원회 위원의 소속 및 성명, 전문분야

6. 증인, 참고인, 예비조사·본조사 및 자문에 참여한 사람 등 검증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소속 및 성명, 전문분야

7. 본조사 결과 및 그 판단 근거

8. 본조사 결과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조치계획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과 관련된 조사
결과에 대해 재검토를 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사 결과보고서에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사 결과보고서의 합리성과 타당성이 부족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조사를 보완할 것을 요구받은 날부터 지체 없
이 결과보고서를 보완하여 문서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중대한 법령위반 사항의 보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법령의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 즉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의 기록)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 과정의 전부를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제16조 및 제17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일반부정행위 검증·조치·보고

제16조(일반부정행위조사)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이하 “일반부정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일반부정행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일반부정행위에 관련된 제보(익명제보를 제외한다)를 접수하거나 이관 받은 경우

2. 제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일반부정행위에 관련된 익명제보를 접수하거나 이관 받아 제5조제1항에 따라 검증·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3. 일반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제보를 접수한 날, 이관을 받은 날 또는 제3호에 따라 일반부정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일반부정행위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일반부정행위조사의 방법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일반부정행위조사 절차·일정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일반부정행위조사를 착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일반부정행위조사를 종료하여야 하고, 일반부정행위조사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일반부정행위조사 결과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에는 제보자에 대한 통보를 아니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일반부정행위조사를 충실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5항에 따른 조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보자, 조사대상자에게 연장사실과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5항에 따라 일반부정행위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제보자와 조사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에는 제보자에 대한 통보를 아니 할 수 있다.

⑩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신

청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제9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일반부정행위조사 결과보고서를 문서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보의 내용과 제보자의 진술내용(제보에 따라 일반부정행위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3. 관련 연구개발과제명
4. 관련 증거자료
5. 증인, 참고인, 일반부정행위조사 및 자문에 참여한 사람 등 검증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명단
6. 일반부정행위조사 결과 및 그 판단 근거
7. 일반부정행위조사 결과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조치계획

제17조(준용규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일반부정행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장(제18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조사

제18조(중앙행정기관의 검증·조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부정행위 및 일반부정행위에 대하여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구개발계획서				[] 신청용 [] 협약용				보안등급 일반[], 보안[]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사업명				
전문기관명(해당 시 작성)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공고번호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선정방식				정책지정[] 공모: 지정공모[] 품목공모[] 분야공모[] 자유공모[]								
기술분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국문										
		영문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법인등록번호								
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연락처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연구개발기간	전체		YYYY. MM. DD - YYYY. MM. DD(년 개월)									
	단계 (해당 시 작성)	1단계	1년차	YYYY. MM. DD - YYYY. MM. DD(년 개월)								
			n년차	YYYY. MM. DD - YYYY. MM. DD(년 개월)								
		n단계	1년차	YYYY. MM. DD - YYYY. MM. DD(년 개월)								
	n년차		YYYY. MM. DD - YYYY. MM. DD(년 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기관부담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지방자치단체	기타()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단계	1년차											
	n년차											
n단계	1년차											
	n년차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해당 시 작성)		기관명	책임자	직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고					
							역할	기관유형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신청시 제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신청시 제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 [(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보안등급: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 표시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3. 전문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4.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5.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6.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7.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8.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9. 선정방식: 공고문에서 제시한 선정방식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10.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과학기술기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11. 부처기술분류: 중앙행정기관에서 소관 법령에 따라 입력을 요청하는 과학기술분류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12. 총괄연구개발명: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에 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 명칭을 기재합니다.
13.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14.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 2)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이 지원·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16.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1)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수요기업)인 경우에 “수요”로 기재합니다.
 - 2)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이 아닌 경우에 “공동”으로 기재합니다.
17.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위탁”으로 기재합니다.
18.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의 역할(공모 시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 1)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지자체”로 기재합니다.
 - 2) 해당 기관이 국외 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국협”으로 기재합니다.
 - 3)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기관인 경우에 “수혜”로 기재합니다.
 - 4)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기관인 경우에 “컨설팅”으로 기재합니다.
 - 5) 그 외는 “기타”로 기재합니다.
19. 기관유형
 -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5) 「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7)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8)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항에 따른 공기업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10)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 1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20.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내용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가능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21. 기관장 서명: 전자서명으로 하고, 신청서 작성·제출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협약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합니다.

< 요약 문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사업명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전체 연구개발기간									
총 연구개발비		총 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천원,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그 외 지원연구개발비: 천원)							
연구개발단계		기초[] 응용[] 개발[] 기타(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기술성숙도 (해당 시 작성)		착수시점 기준() 종료시점 목표()		
연구개발과제 유형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특성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전체 내용							
		1단계 (해당 시 작성)	목표						
			내용						
		n단계 (해당 시 작성)	목표						
			내용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요약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3.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4.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5. 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기술분류를 기재합니다.
6. 총괄연구개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총괄연구개발명을 기재합니다.
7.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명을 기재합니다.
8. 전체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9. 총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총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10. 연구개발단계: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단계 유형에 [√] 표시합니다.
 - 1)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 2)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 3)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 4) 기타는 기초, 응용, 개발 등 3가지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1. 기술성숙도: 특정기술(재료, 부품, 소자, 시스템 등)의 성숙도로서 최종 연구개발 목표, 내용, 최종 결과물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9단계 중 해당하는 단계를 선택합니다(특정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만 작성).
 - 1) 기초연구단계: 1단계(기초 이론 · 실험), 2단계(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 2) 실험단계: 3단계(연구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4단계(연구실 규모의 소재 · 부품 · 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 3) 시작품단계: 5단계(확정된 소재 · 부품 · 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6단계(시험규모의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 4) 제품화단계: 7단계(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8단계(시험제품 인증 및 표준화)
 - 5) 사업화단계: 9단계(사업화)
12. 연구개발과제 유형: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자율적으로 구분한 유형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3. 연구개발과제 특성: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4.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1,0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6.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연구시설 · 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연구시설 · 장비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자립운영계획, 수입금 관리 및 운영계획 등).

< 본문 1 >

※ <본문 1>의 서식은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거나 항목의 순서와 구성을 변경하는 등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별도의 첨부자료 활용이 가능합니다. 과제 수행 중 안전 및 보안상 우려가 있는 경우 6.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을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연구로 인해 현저히 큰 안전상 우려가 발생할 수 있을 경우 안전상 우려가 발생할 가능성과 관련분야 법규 등을 고려하여 안전 조치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 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
- 2)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별 목표(해당 시 작성합니다)
- 3) 연구개발과제의 내용
- 4)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 및 주요 결과물(해당 시 작성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간략하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방법
-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 2)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5.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

(해당 시 작성하며, 작성 시에는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1) 국내외 시장 동향

- (1) 국내외 시장규모 및 수출입 현황
- (2) 국내외 주요 수요처 현황
- (3) 국내외 경쟁기관 및 기술 현황

2)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3) 표준화 전략

4) 사업화 계획

- (1) 사업화 전략
- (2) 투자 계획
- (3) 생산 계획
- (4) 해외시장 진출 계획
- (5) 사업화에 따른 기대효과

6.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

(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제출하는 계획입니다)

1) 안전조치 이행계획

2) 보안조치 이행계획

3) 그 밖의 조치사항 이행계획

본문 1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 정부 정책과의 연관성,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근거 법령 및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 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지식, 기술(또는 공정) 등의 정성적 또는 정량적 목표를 기재합니다.
 - 2)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별 목표(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 단계별 목표를 기재합니다.
 - 3)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지식, 기술 등을 기재합니다.
 - 4)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 및 주요 결과물(해당 시 작성): 주요한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과 각 수행일정별 확인 가능한 결과물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간략하게 작성 가능)
 -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방법: 지식재산권 확보·보호, 기술 도입, 전문가 활용, 연구개발서비스 활용, 다른 기관과의 협력 등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방법, 절차 등을 도식적으로 표현하여 기재하되,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단계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와 그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기재합니다.
 - 2)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과학·기술적, 경제·산업적, 사회적 측면에서 기대효과·파급효과 등을 기재합니다.
5.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해당 시 작성, 작성 시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 1) 국내외 시장동향: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시장동향을 기재합니다.
 - (1) 국내외 시장규모 및 수출입 현황: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현재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시점에 각각 예상되는 시장규모 및 수출입 현황 등을 기재합니다.
 - (2) 국내외 주요 수요처 현황: 국내의 주요 수요처명, 국가명, 수요량, 관련 제품 등을 기재합니다.
 - (3) 국내외 경쟁기관 및 기술 현황: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연구개발 내용과 관련한 경쟁기관 및 기술현황 등을 기재합니다.
 - 2)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기관 및 경쟁기관을 구분하여 관련 현황을 기재합니다.
 - 3) 표준화 전략: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제품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화 전략을 기재합니다.
 - 4) 사업화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1) 사업화 전략: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제품의 홍보, 판로 확보, 판매 전략 등을 기재합니다.
 - (2) 투자계획: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기관의 투자계획을 기재합니다.
 - (3) 생산계획: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제품의 생산계획을 기재합니다.
 - (4) 해외시장 진출계획: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계획을 기재합니다.
 - (5) 사업화에 따른 기대효과: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제품의 사업화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 경제 기여도, 사회가치 기여도, 지역 내 파급효과 등을 기재합니다.
6.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제출 가능)
 - 1) 안전조치 이행계획: 안전책임자의 지정·운영, 안전교육 실시,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조치계획, 사고발생 시 대처방안 및 행동요령을 기재합니다[필요시 해당 기술 관련 안전기준 준수방안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및 종료 후 안전점검(일상·정기·특별 안전점검 등),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등을 포함].
 - 2) 보안조치 이행계획: 연구자 보안교육, 연구시설 및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 외국인·외국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수행 중인 경우 보안조치사항, 영 45조제2항에 따른 보안사고 예방·대응 방안 등을 기재합니다.
 - 3) 그 밖의 조치사항 이행계획: 유전자 변형 생물체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 등 안전 및 보안 관련하여 연구개발과제별로 요구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본문 2 >

1.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종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 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 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자 수	비고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합니다)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 연구자	비고 (신청/수행 중/ 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자 수	비고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3)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합니다)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 연구자	비고 (신청/수행 중/ 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자 수	비고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4)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성명	국적	소속 기관	직위	국가 연구자 번호	학위 및 전공			학생연구자 학위 및 전공 (학생연구자인 경우 추가기재)			담당 역할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 (해당 시 작성)	참여연도				총 참여기간 (개월)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현 학위 과정	전공	입학 년도				1단계		n단계		
														1년	n년	1년	n년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성명	국적	소속 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 (해당 시 작성)	지원연도				총 지원기간 (개월)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1단계		n단계		
										1년	n년	1년	n년	

(5)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해당 시 작성합니다)

※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않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등)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않으나 연구개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정하여 작성합니다.

가. 기관명: (역할:)

책임자	성명	국문	국적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실무 담당자	국문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나. 기관명: (역할:)

책임자	성명	국문	국적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실무 담당자	국문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

(해당 시 작성하며, 작성 시에는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연구개발기관명 (소유권자)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

(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기간 (참여기간)	수행내용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비고 (수행중/완료)
	연구개발기관명 및 역할(주관/공동)				
		yy.mm.dd~yy.mm.dd (yy.mm.dd ~yy.mm.dd)			
		yy.mm.dd~yy.mm.dd (yy.mm.dd ~yy.mm.dd)			

*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5년을 초과하더라도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 또는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기재해야 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기술이전 유형	기술실시계약명	기술실시기관명	기술실시발생일	기술료	기술료 누적 징수액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단위: 천원, 달러)

연구개발기관명	사업화 방식 ¹⁾	사업화 형태 ²⁾	지역 ³⁾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발생 연도	기술 수명
							국내	국외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국내 또는 국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에 등록된 것이어야 합니다.

3) 연구시설·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합니다)

보유기관	연구시설·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시기	현물부담 반영여부 (해당 시 "○")

4)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가 가능합니다)

※ 비영리기관의 경우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백분율)

순번	구분	기관명			
1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국적				
4	기관 유형 (대학, 정부출연연, 중소기업 등)				
5	최대 주주 성명/국적				
6	설립 연월일				
7	주생산 품목				
8	상시 종업원 수				
9	전년도 매출액				
10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11	부채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2	유동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3	자본잠식 현황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자본 총계	yyyy년		
			yyyy년		
			yyyy년		
		자본금	yyyy년		
			yyyy년		
			yyyy년		
14	이자 보상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5	영업 이익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6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자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을 말하며, 표지의 “실무담당자”와 다름)	성명			
		부서			
		직위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팩스			

2.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1) 연구개발비 지원·부담계획

(단위: 천원)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 계		
								지방자치단체			기타()					
단 계	연 차	연구개발기관명 (기관역할 ¹⁾)	현금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합계	
1	1															
	n															
	소계															
n	1															
	n															
	소계															
총계																

* 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연구개발과제 내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역할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 ⁵⁾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 ⁶⁾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 비		연구 재료 비	위탁 연구 개발 비	국제 공동 연구 개발 비	연구 개발 부담 비	연구 활동 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¹⁾	특례 ²⁾	일반 ³⁾	특례 ⁴⁾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시설·장비비를 기재합니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연구시설·장비비를 기재합니다.

5)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이 지원·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6) 대학, 기업 등 참여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와 별도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개발기관에 한해 참여연구자들의 연구수당을 계상하기 위한 기준금액입니다. 해당 금액은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동안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가 실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정도로 공급 금액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2) 연차별 사용계획

(단위: 천원)

연차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 ⁵⁾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 ⁶⁾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 비		연구 재료 비	위탁 연구 개발 비	국제 공동 연구 개발 비	연구 개발 부담 비	연구 활동 비	연구 수당				
일반	특례		일반	특례												
1	현금															
	현물															
	소계															
n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3) 연구개발기관별-연차별 사용계획

가.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단위: 천원)

연차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 ⁵⁾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 ⁶⁾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 비		연구 재료 비	위탁 연구 개발 비	국제 공동 연구 개발 비	연구 개발 부담 비	연구 활동 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1	현금																
	현물																
	소계																
n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나. 공동연구개발기관명(해당 시 작성합니다):

(단위: 천원)

연차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 ⁵⁾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 ⁶⁾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 비		연구 재료 비	위탁 연구 개발 비	국제 공동 연구 개발 비	연구 개발 부담 비	연구 활동 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1	현금																
	현물																
	소계																
n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다. 위탁연구개발기관명(해당 시 작성합니다):

(단위: 천원)

연차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 ⁵⁾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 ⁶⁾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 비		연구 재료 비	위탁 연구 개발 비	국제 공동 연구 개발 비	연구 개발 부담 비	연구 활동 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1	현금																
	현물																
	소계																
n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3)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계획(해당 시 작성합니다)

(1)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필수로 작성합니다)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장비명	현금/현물 구분	구축방식*	규격	수량	구축비용	구축기간	설치장소

* 개발, 구매, 임대, 용역 등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2) 연구시설·장비 운영·활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명	기존/신규 구분	운영기간	비용			전담인력 수	활용계획	설치장소
				연간운영 비용	과제반영 비용	현금/현물 구분 ¹⁾			
			yy~yy						
			yy~yy						

* 1) 협약기간 내 운영·활용하는 연구시설·장비에 소요되는 현금 또는 현물을 기재합니다.

3.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해당 시 작성하며, 작성 시에는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명		단계	1단계(yy~yy)	n단계(yy~yy)	계	가중치(%)
전담기관 등록·기탁지표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계						100

2) 성능지표 및 측정방법

(1) 결과물의 성능지표

평가 항목 (주요성능 ¹⁾)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 ²⁾ (%)	세계 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관	연구개발 전 국내 수준	연구개발 목표치		목표 설정 근거
			성능수준	성능수준	1단계(yy~yy)	n단계(yy~yy)	

* 1) 정밀도,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2) 비중은 각 구성성능 사양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하며 합계는 100%이어야 합니다.

(2)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순번	평가항목 (성능지표)	평가방법	평가환경
1			
2			

< 별첨 자료 >

중앙행정기관 요구사항	별첨 자료
1.	1)
	2)
2.	1)
	2)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본문 2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 (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 (3)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4)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이하 “참여연구자”라 한다)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국가연구자번호,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해당 시 작성), 참여연도, 총 참여기간을 기재합니다.

가) 신규채용 구분: 신규 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비례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 의무)”, 연구개발기관 현금부담 감면을 위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추가)”, 기타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기타)”, 신규채용이 아닌 기존 인력의 경우 “기존”으로 기재합니다.

나) 시간선택제근무 구분: 시간선택제근무(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의 경우 “시간,” 실습연구자(공동연구개발기관인 대학의 학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으로서 방학기간 중 중소기업·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경우 “실습”으로 기재합니다.

다) 참여연도(지원 연도): 연구개발과제에 1개월이라도 참여 시 해당연도에 “○” 표시합니다.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지원인력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지원연도, 총 지원기간을 기재합니다.

- (5)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않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등)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연구개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해당 시 작성, 작성 시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 (1)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 실적):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의 소유기관, 해당 지식재산권명, 출원·등록 국가,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을 기재합니다.
- (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이전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3) 연구시설·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활용할 연구시설·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기관 일반현황: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작성 가능하며,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는 생략하여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 1) 연구개발비 지원·부담계획: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등을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 기관역할은 ‘주관’, ‘공동’, ‘위탁’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 (2) 연차별 사용계획: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 (3) 연구개발기관별-연차별 사용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3)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계획(해당 시 작성)

- (1)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활용할 연구시설·장비의 구축계획을 기재합니다.
- (2) 연구시설 운영·활용계획: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구축될 연구시설의 활용계획을 기재합니다. 이 때 기존/신규 구분은 연구개발기간 시작 전에 구축이 완료된 경우 ‘기존’으로, 연구개발기간 중에 구축이 완료되는 경우 ‘신규’로 입력합니다.

3.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1) 성과지표 및 목표치: 영 별표 3에 따라 전담기관에 등록·기탁하는 연구개발성과와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성과지표와 그 목표치를 기재합니다.

2) 성능지표 및 측정방법

- (1) 결과물의 성능지표: 연구개발과제 성격 및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성능을 수치적으로 작성합니다.
- (2)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확인서, 수요기업 평가 등을 활용하되, 부득이하게 자체평가인 경우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경우, 아래 양식을 작성하여 별첨합니다.

총괄연구개발계획서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사업명			
전문기관명(해당 시 반영)				내역사업명 (해당 시 반영)			
공고번호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	총괄주관 연구개발기관명	총괄 연구책임자	참여기관수		
구분	연구개발 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관수	보안등급	
연구개발과제1							
연구개발과제n							
연구개발 기간	전체		YYYY. MM. DD - YYYY. MM. DD(년 개월)				
	단계 (해당 시 작성)	1단계	1년차	YYYY. MM. DD - YYYY. MM. DD(년 개월)			
			n년차	YYYY. MM. DD - YYYY. MM. DD(년 개월)			
		n단계	1년차	YYYY. MM. DD - YYYY. MM. DD(년 개월)			
			n년차	YYYY. MM. DD - YYYY. MM. DD(년 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현금	현금 현물	지방자치단체 현금 현물	기타() 현금 현물		합계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단계	1년차						
	n년차						
n단계	1년차						
	n년차						
총괄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실무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총괄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협약일 기준)

총괄연구책임자 : (인)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 (직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종질지(80g/m²)]

1.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1) 최종목표 및 내용

	총괄연구개발명	최종 목표	
		전체 내용	
	(연구개발과제 1) 주관연구개발기관	최종 목표	
		전체 내용	
	(연구개발과제 n) 주관연구개발기관	최종 목표	
		전체 내용	

2) 단계별 목표 및 내용(해당 시 작성합니다)

<1단계>

	총괄연구개발명	최종 목표	
		전체 내용	
	(연구개발과제 1) 주관연구개발기관	최종 목표	
		전체 내용	
	(연구개발과제 n) 주관연구개발기관	최종 목표	
		전체 내용	

<n단계>

	총괄연구개발명	최종 목표	
		전체 내용	
	(연구개발과제 1) 주관연구개발기관	최종 목표	
		전체 내용	
	(연구개발과제 n) 주관연구개발기관	최종 목표	
		전체 내용	

3) 연구개발 성과 및 기대효과

	총괄연구개발명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과제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과제 n)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2.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해당 시 작성하며, 작성 시에는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총괄연구개발: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명

(1)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명		단계	1단계(yy~yy)	n단계(yy~yy)	계	가중치(%)
전담기관 등록·기탁지표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계						100

(2) 결과물의 성능지표

평가 항목 (주요성능 ¹⁾)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 ²⁾ (%)	세계 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관	연구개발 전 국내 수준	연구개발 목표치		목표 설정 근거
			성능수준	성능수준	1단계(yy~yy)	n단계(yy~yy)	

* 1) 정밀도,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2) 비중은 각 구성성능 사양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하며 합계는 100%이어야 합니다.

1-1) 연구개발과제 1: 주관연구개발기관명

(1)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명		단계	1단계(yy~yy)	n단계(yy~yy)	계	가중치(%)
전담기관 등록·기탁지표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계						100

(2) 결과물의 성능지표

평가 항목 (주요성능)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 (%)	세계 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관	연구개발 전 국내 수준	연구개발 목표치		목표 설정 근거
			성능수준	성능수준	1단계(yy~yy)	n단계(yy~yy)	

1-2)¹⁾ 연구개발과제 2: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1) 추가할 연구개발과제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있는 경우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명		단계	1단계(yy~yy)	n단계(yy~yy)	계	가중치(%)
전담기관 등록·기탁지표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계						100

(2) 결과물의 성능지표

평가 항목 (주요성능)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 (%)	세계 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관	연구개발 전 국내 수준	연구개발 목표치		목표 설정 근거
			성능수준	성능수준	1단계(yy~yy)	n단계(yy~yy)	

3. 총괄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1) 총괄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4.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 현황

1) 연구개발과제 1

(1) (연구)책임자 현황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

연구개발기관명	구분	(연구)책임자 ¹⁾	직급(위)	학위	전공	최근 연구개발과제(1개) 및 역할
	주관					과제명(기간/역할(소속기관명))
	공동					
	위탁					

* 1) 주관연구개발기관일 경우 연구책임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이거나 위탁연구개발기관일 경우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기관 현황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

연구개발기관명	구분	최근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해당 시 작성합니다)
		과제명(기간/역할(소속기관명))	기술이전 또는 사업화명(발생시점/역할)

2)¹⁾ 연구개발과제 2

* 1) 추가할 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연구)책임자 현황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

연구개발기관명	구분	(연구)책임자 ¹⁾	직급(위)	학위	전공	최근 연구개발과제(1개) 및 역할
	주관					과제명(기간/역할(소속기관명))
	공동					
	위탁					

* 1) 주관연구개발기관일 경우 연구책임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이거나 위탁연구개발기관일 경우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기관 현황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

연구개발기관명	구분	최근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해당 시 작성합니다)
	주관	과제명(기간/역할(소속기관명))	기술이전 또는 사업화명(발생시점/역할)
	공동		
	위탁		

5. 연구개발비

1) 연구개발비 지원·부담계획

(단위: 천원)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 계		
과제	단계	연차	현금	현금	현물	소계	지방자치단체			기타()			현금	현물	합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총괄 연구개발	1단계	1													
		n													
	n단계	1													
		n													
	소계	1													
		n													
연구 개발 과제 1	1단계	1													
		n													
	n단계	1													
		n													
	소계	1													
		n													
연구 개발 과제 n	1단계	1													
		n													
	n단계	1													
		n													
	소계	1													
		n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단위: 천원)

구분		연구개발비												간접비	합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 ⁶⁾
		직접비															
		인건 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		연구 재료 비	위탁 연구 개발 비	국제 공동 연구 개발 비	연구 개발 부담 비	연구 활동 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총괄 연구개발	현금																
	현물																
	소계																
연구 개발 과제 1	현금																
	현물																
	소계																
연구 개발 과제 n	현금																
	현물																
	소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조 (생 략)</u> <u>제4조(부정행위의 검증·조치를 위한 자체규정 마련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접수하거나 이관받은 제보 등에 따른 부정행위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u> <u><신 설></u>	<u>제1장 총칙</u> <u>제4조 (현행 제3조와 같음)</u> <u>제3조(부정행위의 검증·조치를 위한 자체규정 마련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57조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의 검증·조치·보고에 관한 자체규정을 마련·운영할 때에 제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u> <u>제5조(익명제보의 검토)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익명제보를 접수하거나 이관 받은 경우에는 그 제보 내용의 타당성 등 익명으로 제보된 부정행위에 대하여 검증·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u> <u>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검증·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결과 및 이유를 익명제보(제4조제2항제</u>

<신 설>

<신 설>

6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한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익명제보의 내용이 거짓·허위인 경우

2. 익명제보의 내용이 명백히 부정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검증·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내용을 다시 익명제보 한 경우

제2장 연구부정 행위

검증 · 조치 · 보고

제6조(예비조사)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이하 “연구부정 행위”라 한다)를 한 자가 연구부정행위를 한 당시에 소속 연구자일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에 관련된 제보(익명제보를 제외한다)를

접수하거나 이관 받은 경우

2. 제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에 관련된 익명 제보를 접수하거나 이관 받아 제5조제1항에 따라 검증·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3. 연구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제보를 접수한 날, 이관을 받은 날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예비조사의 방법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예비조사 절차·일정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에

<신 설>

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연구부정의심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 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비조사를 착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조사를 종료하여야 하고, 예비조사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조사 결과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에는 제보자에 대한 통보를 아니 할 수 있다.

⑦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혐의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7조(본조사)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예비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

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본조사 절차·일정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성·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결과를 존중하고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예비조사를 착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본조사를 종료하여야 하고, 본조사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에는 제보자에 대한 통보를 아니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

<신 설>

발기관의 장은 본조사를 충실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4항에 따른 조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보자, 조사대상자에게 연장사실과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6조제6항에 따른 예비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제보자와 조사대상자

2. 제7조제4항에 따른 본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제보자와 조사대상자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신청과 관련된 조사 결과에 대해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과 관련된 조사 결과에 대해 재검토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각각 재검토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과 관련된 조사 결과에 대해 재검토를 한 경우,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재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위원회의 판단)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2.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해당 연구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

<신 설>

로 고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권

한)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
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
로 구성하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조사위
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에 위원
의 과반수를 해당 연구개발 분
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
다. 이 경우 해당 연구개발 분야
의 전문가 중 1명 이상을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소속이 아닌 사
람으로 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조사위
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에 위원
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연구
개발기관 소속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분
야와 관련한 전문성을 갖춘 자
가 부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
이 있을 시에는 30퍼센트 이상
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조

사위원이 된 자는 조사대상자 및 조사대상 연구개발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사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조사대상 연구개발과제 또는 제보내용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본조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⑤ 조사위원이 된 자가 조사과정 중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되며, 위원 본인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본조사

에 착수하기 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
정으로 통보할 수 없는 경우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제보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
의 장은 그 신청사유가 정당하
다고 판단하면 해당 위원을 해
촉하고 다른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⑧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조사위
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
지 아니한 경우
4.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신 설>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
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
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⑨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조사대상자, 증인 및 참
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⑩ 조사위원회는 조사 관련자에
게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에 필요
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으며, 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연
구개발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부정의심행위 관련자에 대
한 연구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
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조사대상자 등의 조사 요
청) ①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
는 제8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
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받은 결
과에 대하여 법 제31조제3항에

<신 설>

따른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의 조사 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의 조사 요청 내용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구개발기관의 조사의 결과 또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허위로 연구부정의심행위를 제보한 자에 대하여는 제2호를 준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비조사 및 본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

2. 연구부정의심행위를 제보했

다는 이유로 제보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고, 제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에 따른 연구부정의심행위의 제보·접수·이관, 제5조에 따른 제보의 검토, 제6조에 따른 예비조사에 관한 내용, 제7조에 따른 본조사에 관한 내용, 제8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재검토에 관한 사항 및 이를 통해 알게 된 사항을 본조사 결과(제6조제5항에 따라 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비조사 결과와 제8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재검토 결과를 포함한다)가 통보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1. 제4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한 당시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가 소속된 연

구개발기관에 이관하는 경우

2. 제5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의 장이 익명제보의 검증 필
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
결과 및 사유를 제보자에게
통보하는 경우

3. 제6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
기관의 장이 제보자와 조사대
상자에게 예비조사 절차·일정
을 사전에 통보하는 경우

4. 제7조제2항에 따라 조사위원
회가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
게 본조사 절차·일정을 사전
에 통보하는 경우

5. 제8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
기관의 장이 제보자와 조사대
상자에게 이의신청과 관련된
조사 결과에 대해 재검토 계
획을 통보하는 경우

6. 제10조제5항에 따라 연구개
발기관의 장이 본조사에 착수
하기 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
원회 위원의 명단을 통보하는
경우

③ 조사과정에 참여한 조사위
원이나 조사위원이었던 사람 또

<신 설>

는 조사 관련자이거나 조사 관련자이었던 사람은 예비조사·본조사에서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부정의심행위가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고, 조사대상자가 명예회복을 신청할 경우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결과외의 제출)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문서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따른 증인, 참고인, 예비조사 및 자문에 참여한 사람 등 검증에 관여한 사람의 소속 및 성명은 생략할 수 있다.

1. 제보의 내용과 제보자의 진술내용(제보에 따라 예비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2.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3. 관련 연구개발과제명

4. 관련 증거자료

5. 증인, 참고인, 예비조사 및 자문에 참여한 사람 등 검증에
관여한 사람의 소속 및 성명,
전문분야

6. 예비조사 결과 및 그 판단 근거

7. 예비조사 결과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조치계획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8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신청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문서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따른 조사위원회 위원의 성명과 제6호에 따른 증인, 참고인, 예비조사·본조사 및 자문에 참여한 사람 등 검증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소속 및 성명은 생략할 수 있다.

1. 제보의 내용과 제보자의 진

술내용(제보에 따라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3. 관련 연구개발과제명

4. 관련 증거자료

5. 조사위원회 위원의 소속 및 성명, 전문분야

6. 증인, 참고인, 예비조사·본조사 및 자문에 참여한 사람 등 검증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소속 및 성명, 전문분야

7. 본조사 결과 및 그 판단 근거

8. 본조사 결과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조치계획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과 관련된 조사 결과에 대해 재검토를 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사 결과보고서에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사 결과보고서의 합리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조사를 보완할 것을 요구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결과보고서를 보완하여 문서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중대한 법령위반 사항의 보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법령의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 즉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의 기록)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 과정의 전부를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일반부정행위

검증 · 조치 · 보고

제16조(일반부정행위조사)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이하 “일반부정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일반부정행위조사

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일반부정행위에 관련된 제보(익명제보를 제외한다)를 접수하거나 이관 받은 경우

2. 제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일반부정행위에 관련된 익명제보를 접수하거나 이관 받아 제5조제1항에 따라 검증·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3. 일반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제보를 접수한 날, 이관을 받은 날 또는 제3호에 따라 일반부정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일반부정행위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일반부정행위조사의 방법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

회를 동등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일반부정행위조사 절차·일정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일반부정행위조사를 착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일반부정행위조사를 종료하여야 하고, 일반부정행위조사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일반부정행위조사 결과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에는 제보자에 대한 통보를 아니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일반부정행위조사를 충실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5항에 따른 조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보자, 조사대상자에게 연장사실과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5항에 따라 일반부정행위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제보자와 조사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에는 제보자에 대한 통보를 아니 할 수 있다.

⑩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신청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제9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일반부정행위조사 결과보고서를 문서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보의 내용과 제보자의 진

<신 설> <신 설> <신 설>	<u>술내용(제보에 따라 일반부정 행위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만 해당한다)</u> <u>2.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u> <u>3. 관련 연구개발과제명</u> <u>4. 관련 증거자료</u> <u>5. 증인, 참고인, 일반부정 행위 조사 및 자문에 참여한 사람 등 검증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명단</u> <u>6. 일반부정 행위조사 결과 및 그 판단 근거</u> <u>7. 일반부정 행위조사 결과에 따 른 연구개발기관의 조치계획</u> <u>제17조(준용규정) 제11조부터 제1 5조까지의 규정은 일반부정 행 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u> <u>제4장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조사</u> <u>제18조(중앙행정기관의 검증·조 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 부정 행위 및 일반부정 행위에 대 하여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실 시하는 조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 한다.</u>
--	--